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4. 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4.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4.4.
- 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4.1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박 재 속

가. 제안이유

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(주택분)의 일시(一時) 부과 가능 세액 범위 확대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, 9월에 당해 연도 세액을 1/2씩 나누어 부과 하는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(10만원 이하 →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)

3. 검토보고 (송인수 전문위원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(주택분)의 일시(一時) 부과 가능 세액 범위 확대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내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, 9월에 당해 연도 세액을 1/2씩 나누어 부과함에 있어,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